

개포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14. 3. 18. ~ 3. 21.(4일간)

 감사범위 : 2012. 4. 17. 이후 업무전반

 감 사 반 : 법무감사담당 외 5명

 중점 감사내용

-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여부
- 정부지원사업 관련 관리실태
- 각종 민원 및 업무처리 실태 적정여부 등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본 처분 16건(시정 6, 주의 10)

○ 재정상 조치

- 5건 2,155,960원(회수 3건 987,510, 지급 1건 1,118,660, 세입 1건 49,790)

지적사항

1. 환경미화원 근무 개선대책 이행 부적정

- 환경미화원들의 부적절한 근무형태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청소 행정의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미화원 근무관련 개선대책」을 통보하면서 면(面) 단위 지역의 경우 휴일(토,일,법정공휴일) 근무는 장날, 명절연휴, 기타 비상근무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면장의 근무명령에 의해 휴일 근무토록 규정하고, 또한 근무 중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읍면장 책임하에 주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근무일지에 기록 유지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환경미화원들의 휴일 근무 시 면장의 근무명령을 득하지 아니하고 전례에 의한 휴일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근무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2.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급 부적정

- 예천군 생활폐기물 재활용촉진을 위한 수집보상금 지급 지침 제5조(지급신청서 등)에 보상금 지급대상자로서 보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재활용품 수집·판매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읍·면장은 제출된 서류가 적정한가를 판단하여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에도, □□□ 마을회 외 22개단체 7건에 대하여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시 첨부서류인 재활용품 수집·판매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보상금 23,300,250원 지급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3. 예산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1조(예산집행품의)에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에 대하여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자조협동사업 시행시 시행 품의만 득하고 관급자재 구입 및 장비임차 품의를 생략하고 집행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4. 근무시간 미준수

- 예천군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당직의 구분)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일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제2항에 의하면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고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급 ○○○ 외 4명은 출근 및 퇴근 시간 등을 준수하지 않음.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5. 지출결의서 작성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제121조 규정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구입과지출결의서)서식 내지 별지 제50호(공사·용역 집행과 지출결의서)서식을 사용하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65호)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르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구입과 지출결의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주의 계약, 청구인 날인 및 검수 등을 반드시 확인 하여 집행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 가스 구입 외 5건에서 지출결의서(같은규칙 별표 제45호 서식)를 사용하였으며, 계약, 청구인의 날인 및 물품검수조서를 누락하는 등 관계 규정에 의한 계약 및 회계절차 소홀
- ▶ 관련법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6. 신용카드 사용 인센티브 세입조치 미이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안전행정부 예규(제65호 2013.12.31.)에 의거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년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함에도,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 49,790원을 세입조치 하지 않음
- ▶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 49,790원을 세입조치 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7.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월별 수의계약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하는데도, 201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면서 군청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지 않음

▶ 관련법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8. 환경미화원 연차 유급휴가수당 지급 부적정

- 예천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30조에 의거 연차유급휴가를 미 실시한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2년~2013년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시 환경미화원 ○○○ 외 5명에 대하여 통상 임금 일급 및 휴가일수 착오계상으로 1,118,660원 미지급

▶ 미지급된 연차유급휴가수당 1,118,600원을 지급하고,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9. 환경미화원 봉급 과다 지급

- 예천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68조(임금의종류) 및 제38조(병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병가를 허가 받았을 경우 봉급을 일할계산하여야 함에도, 환경미화원 ○○○ 외 2명에 대하여 2012~2013년 봉급 지급시 일할계산을 하지 않고 476,510원 과다 지급

▶ 과다 지급한 급여 476,510원을 회수하고,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10. 회수 주민등록증 인계 지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업무편람」에서는 읍·면·동장은 회수한 주민등록증을 매월 결산하여 익월 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수한 주민등록증 45건에 대하여 회수한 날부터 익월 5일을 초과하여 인계함

▶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11. 인감증명대리발급사실통보 지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및 종합민원과-43934(2012.12.13)호에 따라 인감 증명대리발급 시 본인에게 우편이나 전화 등으로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감증명대리발급사실을 즉시 통보하지 않고 지연 통보함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12.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시 구비서류 과다 징구

-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시 신청인이 1,000㎡미만의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할 수 있으나, 2012.4.17 ~ 2014.3월 감사일 현재까지 농지취득자가 신청당시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9건을 발급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첨부토록하여 구비서류를 과다 징구하였음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13. 영농(농약)안전장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부적정

- 2013년 영농(농약)안전장비지원사업 계획【농정과-7646(2013.05.21.)】에 의거 병해충 방제, 제초작업 등 영농 작업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장비 공급으로 농업인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지원된 영농(농약)안전장비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시 필요한 농가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지급된 사실이 없는 농가에 우선 배정하여 특정인에게 수년간 연속하여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선정 공급하여야 함에도, 2012년 지원된 총 40세트 중 □□리에 3세트를 배정 ○○○을 선정 공급하였으나 2013년 동 사업 추진시 총 41세트 중 □□□에 3세트를 배정하면서 동일인 ○○○을 재선정 공급하여 중복 지원됨
▶ 영농안전장비 농가 공급대장을 활용하여 3년내에 중복지급 사례가 없도록 배정에 철저를 기하고,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14.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사후관리 소홀

-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할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 상향 및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친환경농업의 질적·양적 성장효과 거양을 위해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육성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읍·면에서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카드를 비치, 활용실태를 확인

토록 되어 있으나, 2010년 사업완료 이후, 지원된 시설장비에 대하여 활용 및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현장 확인결과 친환경 퇴비장 활용도 미흡 및 환경정비 등 관리 소홀

- ▶ 시설 장비별로 활용관리 점검대장을 개별 관리하고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활용 실태사항을 점검하시기 바라며,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15.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부적정

- 건설기계대여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의거 모든 공사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으로 준공시 계상된 대여금지급보증서 계약 여부를 확인 후 정산토록 하여야 함에도, ○○○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반영된 건설기계대여금 121천원(제 경비 포함)에 대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에도 준공시 정산하지 않고 과다 지급
- ▶ 과다 지급된 공사비 121,000원을 회수하고, 준공검사 시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16. 공사비 미 정산 과다 지급

-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표준품셈, 공사원가계산 적용기준, 설계기준철,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조사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이 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함에도, ■■■■(주) ○○○과 계약한 ○○○ 웅벽설치공사에 대하여 콘크리트 소운반 수량이 63m³ 계상되었으나 소운반하지 않고 타설 하였음에도 준공시 정산 조치 없이 준공급을 지급하여 도급액 기준 390천원(제 경비포함) 과다 지급
- ▶ 과다 지급된 공사비 390,000원을 회수하고, 준공검사 시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